

[붙임]

2020학년도 제1학기 다전공 및 부전공 신청(취소) 안내

1. 모집인원: [붙임1] 참조

가. 다전공

- 1) 제2전공: 학부(과)별 1학년 입학정원의 100%
- 2) 연계전공: 60명
- 3) 융합전공

가) 60명 이내

나) LINC+사업 또는 SW중점육성사업 참여학생 및 참여희망학생에 한하여 모집(LINC+사업: 02-2287-5208 / SW중점육성사업:02-2287-7111)

나. 부전공: 약간명(단,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신청 또는 전환 불가)

2. 신청자격

구분		신청자격
학기		1학년 2학기 이상 수료(예정)한 재학생
학점	2013학번 이전	35학점 이상 취득(예정)
	2014학번 이후	33학점 이상 취득(예정)
* 2020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성적 미포함		

가. 교직목적 사범계 학과의 제2전공 신청은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만 가능하며, 교직목적 부전공 신청 불가

나. 사범계 학과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설치 학과(문헌정보학전공, 식품영양학전공)의 제2전공은 '일반 다전공' 또는 '교직목적 다전공' 중 선택하여 신청

3. 졸업기준

가. 다전공

- 1) 입학학년도 또는 복학 원학년도 교육과정 이수

* 복학 원학년도: 복학 시 함께 졸업을 하게 되는 원학년도(단, 2013학번 이전 학생의 경우, 총 140학점 이상 이수)

- 2) 편입생: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주전공 및 다전공의 취득학점 이수

나. 부전공: 해당 학과 전공 이수구분 상관없이 21학점 취득

4. 선발방법

가. 신청자 중 총 평점평균 우수자 순(단, 예체능계열의 경우, 실기전형 통과자로 함)

나. 총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동점자 모두 선발

다. 일반 다전공과 교직목적 다전공 신청자의 총 평점평균을 구분하여 선발하지 않음

라. 2015학년도 대학 학사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조치: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및 일어교육과 재학생은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과로 다전공 가능

5. 신청 및 취소기간: 2020.05.6.(수)~05.20.(수) <예체능계열 실기전형 일정 추후 개별 통보>

6. 결과발표: 2020.7.24.(금) 예정

붙임 1. 2020학년도 제2학기 다전공 및 부전공 선발인원 1부.

2. 예체능계열 실기전형 내용 및 기준 1부.

2020. 05.

서울캠퍼스 교무처장

2020학년도 제1학기 다전공 및 부전공 선발인원

※ 인공지능융합전공의 경우 모집 관련하여 반드시 SW중점육성사업에 개별연락하여 별도확인 요함.

대학	학부(과)		다전공		부전공	주관학과
			전체	교직		
인문 사회 과학 대학	인문콘텐츠학부	역사콘텐츠전공	35	-	약간명	
	인문콘텐츠학부	지적재산권전공	25	-	약간명	
	인문콘텐츠학부	문헌정보학전공	30	6	약간명	
	공간환경학부		44	-	약간명	
	공공인재학부		55	-	약간명	
	가족복지학과		30	-	약간명	
	국가안보학과		34	-	약간명	
	문화콘텐츠연계전공		60	-	-	역사콘텐츠전공
	빅데이터과학연계전공		60	-	-	문헌정보학전공
	콘텐츠제작연계전공		60	-	-	한일문화콘텐츠전공
	공간정보빅데이터연계전공		60	-	-	공간환경학부
	아동·청소년상담연계전공		60	-	-	가족복지학과
	영유아체육과건강교육연계전공		60	-	-	가족복지학과
	디지털인문정보융합전공		60	-	-	역사콘텐츠전공
사범 대학	국어교육과		45		약간명	
	영어교육과		45		약간명	
	교육학과		30		약간명	
	수학교육과		36		약간명	
경영 경제 대학	경제금융학부		68	-	약간명	
	경영학부		85	-	약간명	
	글로벌경영학과		73	-	약간명	
	핀테크융합전공		60	-	-	경제금융학부/LINC+사업단
	부동산학연계전공		60	-	-	경제금융학부
	금융ICT연계전공		60	-	-	경제금융학부
	빅데이터융합전공		60	-	-	경영학부/LINC+사업단
	스마트생산융합전공		60	-	-	경영학부/LINC+사업단
신산업비즈니스융합전공		60	-	-	경제금융학부/LINC+사업단	
융합 공과 대학	SW융합학부	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	75	-	약간명	
		게임전공	35	-	약간명	
		애니메이션전공	23			
		한일문화콘텐츠전공	27			
	전기전자공학부	융합전자공학전공	32	-	약간명	
		전기공학전공	32	-	약간명	
	생명화학공학부	생명공학전공	39			
		화학에너지공학전공	39	-	약간명	
		화공신소재학전공	39	-	약간명	
	지능정보융합전공		60	-	-	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
인공지능융합전공		약간명*	-	-	컴퓨터과학전공/SW중점육성사업	
문화 예술 대학	외식의류학부	식품영양학전공	31	6	약간명	
		의류학전공	26	-	약간명	
	스포츠무용학부	스포츠건강관리전공	33	-	약간명	
		무용예술전공	31	-	약간명	
	미술학부	조형예술전공	22	-	약간명	
		생활예술전공	33	-	약간명	
	음악학부		59	-	-	
	외식경영학연계전공		60	-	-	식품영양학과
	미디어아트연계전공		60	-	-	조형예술학과
음악경영학연계전공		60	-	-	음악학부	
문화예술융합전공		60	-	-	음악학부	

예체능계열 실기전형 내용 및 기준

※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/비대면 평가방식으로 추후 변동 될 수 있음.

학과(전공)명	실기능력 최저기준	실기고사 내용
스포츠건강관리학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자리 멀리뛰기 남자 227cm이하 여자 182cm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자리 멀리뛰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자리 높이뛰기(서전트) 남자 53cm이하 여자 20cm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자리 높이뛰기(서전트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M 왕복달리기 남자 18.41초 이상 여자 20.41초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M 왕복달리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윗몸 일으키기 남자 40개 이하 여자 35개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윗몸 일으키기
	위의 4종목 중 3종목 이상 최저기준 이하 점수로 취득할 경우 불합격 처리	
조형예술학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80점 이상/100점 만점 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포트폴리오 심사
생활예술학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80점 이상/100점 만점 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포트폴리오 심사
무용예술학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80점 이상/100점 만점 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중 택 1 (3분 이내 작품 시험)
음악학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80점 이상/100점 만점 기준 	<p><피아노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에 공지한 실기 2곡 악보 없이 연주 • 전공교수 상담 <p><성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독일, 이태리 가곡에서 각각 원어로 1곡씩 (한국은 오라토리오나 오페라 아리아도 가능함. 단, 오라토리오나 오페라 아리아는 원조, 원어로 부르되 가곡과 아리아는 언어가 달라야 함. 암보를 원칙으로 함.) <p><뉴미디어작곡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성음악분석-화성풀이 및 형식분석(반영률 20%) • 화성학(반영률 20%) • 청음(반영률 10%) • 작곡-론도형식의 독주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곡 작곡 (반영률 50%) <p><관현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유곡 1곡 (관현악기, 암보로 연주)

「학칙」 제44조의2

제44조의2 (다전공, 부전공 및 심화전공 이수 의무) ① 학생은 졸업을 위해서 다전공(제2전공, 연계전공, 자기설계융합전공, 융합전공 등), 부전공 및 심화전공 중의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 및 예외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「학사에 관한 규정」 제12장

제12장 다전공, 부전공 및 심화전공

제57조 (다전공 신청 및 선발방법) ① 다전공은 1학년 2학기 재학생(2개 학기 수료학점 이수예정자)부터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 학기의 계절수업 학점 및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.

② 간호학과를 제외한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(전공)를 다전공 이수 대상 학과(전공)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전공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선발방법은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학과(전공)별로 구술시험, 필기시험,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58조 (다전공 이수 및 학점인정) ① 다전공하는 자는 해당 학과(전공)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학과(전공)별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또한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하는 자의 최소 전공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「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삭제

③ 연계전공과정을 다전공하는 자는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소정의 전공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 운영 기준 및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자기설계융합전공을 다전공하는 자는 둘 이상의 전공으로 융합설계한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자기설계융합전공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⑤ 융합전공을 다전공하는 자는 융합전공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소정의 전공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융합전공에 관한 세부 운영 기준 및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⑥ 캠퍼스간 복수전공을 하는 자는 소정의 전공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캠퍼스 간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 운영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⑦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 중에서 다전공의 전공교과목과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, 최대 6학점까지 다전공 학과(전공)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하는 자는 「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⑧ 다전공 교과목을 해당 전공 교과목과 다른 이수구분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해당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⑨ 편입학자의 다전공 이수 시 제1전공(원전공)도 소속 원학년 학과(전공)의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이수구분별로 이수하여야 한다.

제59조 (다전공의 취소) ① 다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취소할 수 있다.

② 다전공 취소자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한다.

③ 다전공 이수자가 다전공을 취소하더라도 부전공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전공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60조 (다전공 사정심사) ① 다전공 사정심사는 제1전공과 동일한 절차로 하되 다전공하는 학과(전공)에서 시행한다.

②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 외에 논문(시험, 실기발표 등)을 다전공하는 학과(전공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1조 (다전공 학위수여) ① 제1전공 및 다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복수의 학위를 수여하며 소속은 제1전공으로 한다.

② 다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지만 제1전공의 졸업요건이 미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.

제62조 (다전공 제한사항) ① 교직과정을 목적으로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 학과(전공)를 다전공할 경우, 제1전공이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 학과(전공) 소속 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.

② 일반계학생이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설치 학과(전공)를 다전공 할 경우 최소 전공이수학점은 제58조 제1항과 같다.

③ 다전공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성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④ 다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63조 (부전공 신청 및 선발방법) ① 부전공은 1학년 2학기 재학생(2개 학기 수료학점 이수예정자)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 학기의 계절수업 학점 및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.

② 부전공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성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간호학과를 제외한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(전공)를 부전공 이수 대상 학과(전공)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전공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부전공 선발인원은 학과(전공)별로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하되, 부전공 정원 및 선발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4조 (부전공 이수학점) ① 일반 부전공자의 경우 학과(전공)별 전공교과목 내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21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이외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경우 학과(전공)별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(다만, 본 조항은 2007년입학자까지 적용)

제65조 (부전공 교과이수 및 취소) ① 부전공 교과목을 사전에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부전공 승인과 동시에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.

②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취소할 수 있다.

③ 취소자의 기취득학점은 일반선택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.

제66조 (부전공 기본이수영역교과목 이수)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사범대학의 학과와 교직과정설치전공(학과)을 부전공하는 경우 기본이수영역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, 그 세부사항은 「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7조 (부전공 사정심사 및 제한사항) ① 사정심사는 부전공 학과(전공)에서 시행한다.

② 부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67조의2 (심화전공 이수) 심화전공이라 함은 제1전공의 심화된 내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세부운영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「다전공에 관한 시행세칙」

제1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학칙」 제44조의2 및 「학사에 관한 규정」 제57조 내지 제62조에 따라 상명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칭한다) 다전공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제2조 (모집인원) 다전공 모집인원은 학부(과)별 2학년 입학정원의 100% 이내에서 정하되, 선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9.01>

제3조 (신청자격) ① 1학년 2학기(2개 학기) 과정이상을 수료(예정)한 재학생이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 학기의 계절수업 학점 및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2013학번 이전은 35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로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③ 2014학번 이후는 33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로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④ 2016학번 이후는 다전공(제2전공, 연계전공, 자기설계융합전공, 융합전공 등), 부전공, 심화전공 중의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편입학자, 공학인증대상자, 체육특기자, 특수교육대상자, 외국인 특별전형, 계약학과,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 및 천안캠퍼스 소속 학생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7.09.01>

제4조 (신청시기)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은 매학기 5월 및 11월에 다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 (신청절차 및 선발) ① 다전공 이수 희망자는 다전공 학부(과)장 및 학장의 결재를 득한 "별지 1"의 이수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다전공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학부(과)별로 구술시험, 필기시험, 실기시험 등의 추가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9.01>

1. 모집인원 범위 내 신청자 중 총 평점평균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. <개정 2017.09.01>

2. 추가전형(구술, 필기, 실기 등)을 실시한 학부(과)의 경우 추가전형 최저기준 통과자 중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총 평점평균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. <개정 2017.09.01>

3. 총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동점자 모두를 선발한다.

4. 일반 다전공 신청자와 교직목적 다전공 신청자의 총 평점평균을 구분하여 전형하지 않는다.

5. 다전공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성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6. 다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 (이수기간) ① 다전공은 승인된 학기부터 시작되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제1전공 졸업시까지 소정의 다전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, 다전공 졸업요건 미충족 시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. <개정 2017.09.01>

제7조 (이수제한) ① 간호학과를 제외한 소속 캠퍼스 내 모든 학부(과)를 다전공 이수 대상 학부(과)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전공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사범대학 다전공을 하는 경우 다전공은 이수하되 교원자격증은 수여받지 못한다.

③ 폐과된 학부(과)로의 다전공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17.09.01>

④ 다전공 선발 시 해당전공을 제2전공으로 표기하며, 제3전공까지 선발될 수 있다. <신설 2017.09.01>

제8조 (교육과정 이수) ①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입학년도 또는 복학년도의 해당 학부(과) 졸업이수학점(각 학부(과)별 36학점 ~ 54학점 이상)을 취득하여야 한다. 또한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하는 자의 최소전공인정학점에 관한 사항은 「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제1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 중에서 다전공의 전공교과목과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, 최대 6학점까지 다전공 학부(과)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하는 자는 「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7.09.01>

③ 편입학자 다전공 이수 시 제1전공(원전공)도 소속 원학년 학부(과)의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이수구분별로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제9조 (취 소) ① 다전공 이수를 취소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5월 및 11월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"별지 2"의 취소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다전공 취소자의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③ 다전공 이수자가 다전공을 취소하더라도 부전공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전공을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9.01>

제10조 (학위수여)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증서를 수여한다.

② 다전공 이수자에게는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제1전공의 학위명과 다전공학과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③ 다전공 중도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해당학기에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④ 다전공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이 미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학위수여가 불

가능하다. <개정 2017.09.01>

제11조 (세부사항)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특례조치) 2015학년도 대학 학사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불어교육과 및 일어교육과 재학생은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과로 다전공이 가능하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특례조치) 2015학년도 대학 학사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이 통·폐합되는 경우(법학과, 행정학과, 불어교육과, 일어교육과, 정보보안전공, 한국화전공, 서양화전공, 조소전공, 피아노과, 성악과, 뉴미디어작곡과, 관현악과)는 다전공 진입을 불허한다.

부칙

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「부전공에 관한 시행세칙」

제1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학칙」 제44조의2 및 「학사에 관한 규정」 제63조 내지 제67조에 따라 상명대학교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제2조 (모집인원) 부전공 모집인원은 학부(과)별로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정하되, 필요한 경우 부전공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9.01>

제3조 (신청자격) ① 1학년 2학기(2개 학기) 과정이상을 수료(예정)한 재학생이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 학기의 계절수업 학점 및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2013학번 이전은 35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로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③ 2014학번 이후는 33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로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④ 2016학번 이후는 다전공(제2전공, 연계전공, 자기설계융합전공 등), 부전공, 심화전공 중의 하나를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편입학자, 공학인증대상자, 체육특기자, 특수교육대상자, 외국인특별전형, 계약학과,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 및 천안캠퍼스 소속학생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7.09.01>

제4조 (신청시기) ①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은 매학기 5월 및 11월에 부전공을 신청할 수 한다.

제5조 (신청절차 및 선발) ① 부전공 이수 희망자는 부전공 학부(과)장 및 학장의 결재를 득한 "별지 1"의 이수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부전공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학부(과)별로 구술시험, 필기시험, 실기시험 등의 추가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9.01>

1. 추가전형(구술, 필기, 실기 등)을 실시한 학부(과)의 경우 추가전형 최저기준 통과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2. 부전공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성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3. 부전공 교과목 중 실험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 (이수기간) ① 부전공은 승인된 학기부터 시작되며 부전공 교과목을 사전에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부전공 승인과 동시에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제1전공 졸업 시까지 소정의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, 부전공 졸업요건 미충족 시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. <개정 2017.09.01>

제7조 (이수제한) ① 간호학과 및 연계전공을 제외한 소속 캠퍼스의 모든 학부(과)를 부전공 이수 대상 학부(과)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전공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폐과된 학과로의 부전공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17.09.01>

제8조 (교육과정이수) ①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학부(과)별 전공교과목내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21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이외의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편입학자 부전공 이수 시 제1전공은 소속 원학년 학부(과)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제9조 (취 소) ① 부전공 이수를 취소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5월 및 11월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"별지 2"의 취소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취소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. <개정 2017.09.01>

제10조 (학위수여) ① 부전공 이수자에게는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제1전공의 학위명에 부전공 이수 상황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② 부전공 중도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해당학기에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17.09.01>

③ 부전공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.

제11조 (세부사항)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특례조치) 2015학년도 대학 학사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이 통·폐합되는 경우(법학과, 행정학과, 불어교육과, 일어교육과, 정보보안전공, 한국화전공, 서양화전공, 조소전공, 피아노과, 성악과, 뉴미디어작곡과, 관현악과)는 부전공 진입을 불허한다.

부칙

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